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 안 호	161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11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- 보은도서관 및 영동도서관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함.
- 제천도서관이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로 이전과 함께, 동 구내에 도서관, 수영장, 로울러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종합문화시설로 됨에따라, 제천학생회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제천도서관을 폐지하고자 함.
- 도서관장의 보직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서직으로 보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의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의 보직을 "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"에서 "지방사서서기관"으로 변경하고, 제천 도서관의 폐지로 "제천도서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"를 삭제하며, 기타 도서관장은 "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"를 "지방사서주사"로 보한다로 변경함(안 제4조).
- [별표]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중 제천도서관란을 삭제하고, 보은도서관의 위치 "교사리 390-1" 을 "삼산리 125-1"로 하고, 영동도서관의 위치 "계산리 697-25" 를 "부용리 20-3"으로 한다.

□ 개정근거
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(법률 제5069호, 1995. 12. 29)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부칙 제3조(대통령령 제14486호, 1994. 12. 31)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(법률 제5069호, 1995. 12. 29)

□ 조례안 : 덧붙임

□ 참고사항 : 덧붙임

- 신·구 조문 대비표
- 관계법령 발췌서
-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서 사본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되,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하고,
기타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[별표]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중 제천도서관란을 삭제하고, 보은도서관과 영동도서관란
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 서 관 명	위 치
보 은 도 서 관	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-1
영 동 도 서 관	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-3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의 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은 1997년
1월 1일부터 시행한다.